

【별첨1-1】 신구조문대비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약관-070호(2022.04.2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2조 <생략></p> <p>제3조(운용관리업무) ① <생략> 1~3. <생략> 4.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u>계리</u> 5~6. <생략> ②~④ <생략></p> <p>제4~6조 <생략></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p> <p>2~13. <생략> ③~⑤ <생략></p> <p>제8~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2조 <좌동></p> <p>제3조(운용관리업무) ① <좌동> 1~3. <좌동> 4.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u>회계처리</u> 5~6. <좌동> ②~④ <좌동></p> <p>제4~6조 <좌동></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좌동>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u>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u></p> <p>2~13. <좌동> ③~⑤ <좌동></p> <p>제8~10조 <좌동></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6조 개정(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1조(부담금의 <u>계산</u> 및 납입) <생략></p> <p>제12~17조 <생략></p> <p>제18조(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신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신설></u>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u>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u>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며, <u>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금규약 등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u>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p> <p>⑤ <생략> ⑥ 은행은 운용지시내역이 완료되어 지급할 수 있는 대기자금이 확보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세금과 공과금 및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을 완료한 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 또는 가입자 계좌</u>에 입금처리토록 자산관리기관에 입금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p> <p>제19조 (<u>양도 및 담보제공</u>)</p>	<p>제11조(부담금의 <u>산정</u> 및 납입) <좌동></p> <p>제12~17조 <좌동></p> <p>제18조(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①~② <좌동> ③ 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등</u>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u>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u>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며, <u>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금규약 등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u>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p> <p>⑤ <좌동> ⑥ 은행은 운용지시내역이 완료되어 지급할 수 있는 대기자금이 확보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세금과 공과금 및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을 완료한 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등 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나 가입자 명의의 계좌</u>에 입금처리토록 자산관리기관에 입금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p> <p>제19조 (<u>양도·압류·담보제공</u>)</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10의2호 신설(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p> <p>② <생략></p> <p>제20~3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0년 12월 24일</u>부터 시행합니다. <신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연금<u>계리</u>업무 및 기록관리업무,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u>계리</u>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p>제2~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p>	<p>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p> <p>② <좌동></p> <p>제20~37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 일</u>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u></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업무의 일부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연금<u>회계처리</u>업무 및 기록관리업무,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u>회계처리</u>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p>제2~4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p>	<p>법 제7조 개정 (2022.4.14)</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4조 <생략></p> <p>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u>신설</u>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13. <생략> ② <생략></p> <p>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u>1. 집합교육</u> <u>2. 온라인(web)교육</u> <u>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u> <u>4.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u></p> <p>② 제1항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생략>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u>교육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u> 실시합니다.</p> <p>제7~9조 <생략></p>	<p>제1~4조 <좌동></p> <p>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좌동>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u>개정등으로의</u>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13. <좌동> ② <좌동></p> <p>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u>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u> <u>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u> <u>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u> <u>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게시</u></p> <p>② 제1항제1호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좌동>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u>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u> 실시합니다.</p> <p>제7~9조 <좌동></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개정(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 2 신설(2022.4.14)</p> <p>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 2 신설(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0조(면책) ① <생략> ②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제11~14조 <생략></p> <p>제15조(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u>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u>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p> <p>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p> <p>I ~Ⅲ. <생략></p> <p>IV. 기타 <u>연금계리</u>에 관한 사항 <생략></p>	<p>제10조(면책) ① <좌동> ②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제11~14조 <좌동></p> <p>제15조(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u>요건을 갖춘 전문기관</u>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좌동></p> <p>제16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p> <p>I ~Ⅲ. <좌동></p> <p>IV. 기타 <u>연금 회계처리</u>에 관한 사항 <좌동></p> <p><u>※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u></p>	<p>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 3 신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 (2022.4.14)</p>

【별첨2-1】 신구조문대비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약관-071호(2022.04.2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6조 <생략></p> <p>제7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생략>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u>양도 및 담보제공</u>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④ <생략></p> <p>제8~14조 <생략></p> <p>제15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신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⑦ <생략></p> <p>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6조 <좌동></p> <p>제7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좌동>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u>양도·압류·담보제공</u>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④ <좌동></p> <p>제8~14조 <좌동></p> <p>제15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⑦ <좌동></p> <p>제16조 <좌동></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7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u>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p> <p>제18조(중도해지) ①~⑤ <생략>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u>개인형퇴직연금제도</u> <u>계정으로</u>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생략></p> <p>제19~21조 <생략></p> <p>제22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신설></u>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③ <생략></p> <p>제23~3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p>	<p>제17조(양도·압류·담보제공) ① <u>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좌동></p> <p>제18조(중도해지) ①~⑤ <좌동>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u>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좌동></p> <p>제19~21조 <좌동></p> <p>제22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등</u>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③ <좌동></p> <p>제23~36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이 계약서는 <u>2020년 12월 24일</u>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p>	<p>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 4월 14일</u>부터 시행된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u>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p> <p><u>※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u></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

【별첨1-2】 신구조문대비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약관-072호(2022.04.2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6조 <생략></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신설></p> <p>2~13. <생략> ③~⑥ <생략></p> <p>제8~15조 <생략></p> <p>제16조(급여의 지급)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신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신설>을</p>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6조 <좌동></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좌동>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p> <p>2~13. <좌동> ③~⑥ <좌동></p> <p>제8~15조 <좌동></p> <p>제16조(급여의 지급) ①~③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 개정(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p> <p>제17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p> <p>제18~3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p> <p>제1~4조 <생략></p> <p>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p> <p>제17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좌동></p> <p>제18~35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p> <p>제1~4조 <좌동></p> <p>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1~3. <생략></p> <p>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u>로 <신설></u>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p> <p>5~13.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교육방법 및 횟수)</p> <p>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p> <p><u>1. 집합교육</u></p> <p><u>2. 온라인(web)교육</u></p> <p><u>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u></p> <p><u>4.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내용만 해당)</u></p> <p>② 제1항제3호의 <u>교부</u>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p> <p>③ <생략></p> <p>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u>교육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u> 실시합니다.</p> <p>제7~9조 <생략></p> <p>제10조(면책)</p> <p>① <생략></p> <p>②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p>	<p>1~3. <좌동></p> <p>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u>의 계정등으로의</u>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p> <p>5~13. <좌동></p> <p>② <좌동></p> <p>제6조(교육방법 및 횟수)</p> <p>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p> <p><u>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u></p> <p><u>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u></p> <p><u>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u></p> <p><u>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게시(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 교육내용만 해당)</u></p> <p>② 제1항제1호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p> <p>③ <좌동></p> <p>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u>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u> 실시합니다.</p> <p>제7~9조 <좌동></p> <p>제10조(면책)</p> <p>① <좌동></p> <p>②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개정(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 2 신설(2022.4.14)</p> <p>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 2 신설(2022.4.14)</p> <p>인용조문 변경내용</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제11~14조 <생략></p> <p>제15조(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u>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u>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p> <p>제16조 <생략></p>	<p>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제11~14조 <좌동></p> <p>제15조(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u>요건을 갖춘 전문기관</u>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좌동></p> <p>제16조 <좌동></p> <p><u>※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u></p>	<p>반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 3 신설</p>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6조 <생략></p> <p>제7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생략>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u>양도 및 담보제공</u>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영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p> <p>③~④ <생략></p> <p>제8~14조 <생략></p> <p>제15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영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신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p> <p>②~⑧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6조 <좌동></p> <p>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좌동>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u>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u>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영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p> <p>③~④ <좌동></p> <p>제8~14조 <좌동></p> <p>제15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영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p> <p>②~⑧ <좌동></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6조 <생략></p> <p>제17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u>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p> <p>제18조(중도해지) ①~⑤ <생략>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u>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u>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생략></p> <p>제19~21조 <생략></p> <p>제22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신설>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③ <생략></p> <p>제23~3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6조 <좌동></p> <p>제17조(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u>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좌동></p> <p>제18조(중도해지) ①~⑤ <좌동>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u>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좌동></p> <p>제19~21조 <좌동></p> <p>제22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u>등</u>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③ <좌동></p> <p>제23~36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0년 12월 24일</u>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 4월 14일</u>부터 시행된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u>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p> <p><u>※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u></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

【별첨1-3】 신구조문대비표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약관-074호(2022.04.2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6조 <생략></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신설></p> <p>2~13. <생략> ③~⑥ <생략></p> <p>제8~15조 <생략></p> <p>제16조(급여의 지급)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신설>을</p>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6조 <좌동></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좌동>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p> <p>2~13. <좌동> ③~⑥ <좌동></p> <p>제8~15조 <좌동></p> <p>제16조(급여의 지급) ①~③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 개정(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p> <p>제17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p> <p>제18~3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p> <p>제1~4조 <생략></p> <p>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p> <p>제17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좌동></p> <p>제18~35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p> <p>제1~4조 <좌동></p> <p>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u><신설></u>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13. <생략> ② <생략></p> <p>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u>1. 집합교육</u> <u>2. 온라인(web)교육</u> <u>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u> <u>4.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내용만 해당)</u></p> <p>② 제1항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생략>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u>교육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u> 실시합니다.</p> <p>제7~9조 <생략></p> <p>제10조(면책) ① <생략> ②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p>	<p>1~3. <좌동>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u>개정등으로의</u>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13. <좌동> ② <좌동></p> <p>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u>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u> <u>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u> <u>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u> <u>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게시(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 교육내용만 해당)</u></p> <p>② 제1항<u>제1호</u>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좌동>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u>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u> 실시합니다.</p> <p>제7~9조 <좌동></p> <p>제10조(면책) ① <좌동> ②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개정(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 2 신설(2022.4.14)</p> <p>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 2 신설(2022.4.14)</p> <p>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제11~14조 <생략></p> <p>제15조(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u>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u>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p> <p>제16조 <생략></p>	<p>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제11~14조 <좌동></p> <p>제15조(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u>요건을 갖춘 전문기관</u>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좌동></p> <p>제16조 <좌동></p> <p><u>※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u></p>	<p>반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령 제32조의 3 신설</p>

【별첨2-3】 신구조문대비표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약관-075호(2022.04.2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6조 <생략></p> <p>제7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생략>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u>양도 및 담보제공</u>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p> <p>③~④ <생략></p> <p>제8~14조 <생략></p> <p>제15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신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p> <p>②~⑧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6조 <좌동></p> <p>제7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좌동>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u>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u>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p> <p>③~④ <좌동></p> <p>제8~14조 <좌동></p> <p>제15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p> <p>②~⑧ <좌동></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6조 <생략></p> <p>제17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u>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p> <p>제18조(중도해지) ①~⑤ <생략>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u>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u>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생략></p> <p>제19~21조 <생략></p> <p>제22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신설>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③ <생략></p> <p>제23~3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6조 <좌동></p> <p>제17조(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u>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좌동></p> <p>제18조(중도해지) ①~⑤ <좌동>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u>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좌동></p> <p>제19~21조 <좌동></p> <p>제22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u>등</u>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③ <좌동></p> <p>제23~36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0년 12월 24일</u>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 4월 14일</u>부터 시행된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u>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p> <p><u>※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u></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

■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6조 <생략></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u><신설></u></p> <p>2~13. <생략> ③~⑥ <생략></p> <p>제8~14조 <생략></p> <p>제15조(급여의 지급)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신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신설></u>을</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6조 <좌동></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좌동>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u>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u></p> <p>2~13. <좌동> ③~⑥ <좌동></p> <p>제8~14조 <좌동></p> <p>제15조(급여의 지급)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등을</u></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제25 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p> <p>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p> <p>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와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p> <p>1~6. <생략></p> <p>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p> <p>③ <생략></p> <p>제17~3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p> <p>이 계약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p>	<p>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p> <p>제16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p> <p>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와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p> <p>1~6. <좌동></p> <p>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p> <p>③ <좌동></p> <p>제17~31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p> <p>이 계약서는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2022.4.14)</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2조 <생략></p> <p>[별지1]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4조 <생략></p> <p>제5조(가입자 교육)</p> <p>① <생략></p> <p>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p> <p><u>1. 집합교육</u></p> <p><u>2. 온라인(web)교육</u></p> <p><u>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u></p> <p>③~④ <생략></p> <p>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제2조 <좌동></p> <p>[별지1]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4조 <좌동></p> <p>제5조(가입자 교육)</p> <p>① <좌동></p> <p>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p> <p><u>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u></p> <p><u>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u></p> <p><u>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u></p> <p>③~④ <좌동></p> <p>⑤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u>※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u></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제32 조의2(2022.4.14)</p> <p>인용조문 변경내 용 반영</p>

■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5조 <생략></p> <p>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생략>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u>양도 및 담보제공</u>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생략></p> <p>제7~13조 <생략></p> <p>제14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신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⑧ <생략></p> <p>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5조 <좌동></p> <p>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좌동>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u>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u>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좌동></p> <p>제7~13조 <좌동></p> <p>제14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u>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⑧ <좌동></p> <p>제15조 <좌동></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개정(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개정(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6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u>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p> <p>제17조(중도해지) ①~⑤ <생략>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신설>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생략></p> <p>제18~19조 <좌동></p> <p>제20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신설>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생략></p> <p>제21~3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p>	<p>제16조(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u>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좌동></p> <p>제17조(중도해지) ①~⑤ <좌동>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u>계정등</u>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좌동></p> <p>제18~19조 <좌동></p> <p>제20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u>계정등</u>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좌동></p> <p>제21~3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17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이 계약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별지1]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p>	<p>이 계약서는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별지1]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p> <p>※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조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생략>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u>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u>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p> <p>다~차. <생략> 2~7. <생략> ② <생략></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조 <좌동></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좌동>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u>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u>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p> <p>다~차. <좌동> 2~7.<좌동> ② <좌동></p> <p>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좌동>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u>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u></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제 24조제2항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제25 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2~13. <생략> ③~⑥ <생략></p> <p>제8~15조 <생략></p> <p>제16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u>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와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p> <p>1. <생략>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u>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u></p> <p>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담하는 경우 <u>(단,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u></p> <p>가~다. <생략> 3~6. <생략>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p>	<p>2~13. <좌동> ③~⑥ <좌동></p> <p>제8~15조 <좌동></p> <p>제16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u>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와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p> <p>1. <좌동>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u><삭제></u></p> <p>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담하는 경우 <u><삭제></u></p> <p>가~다. <좌동> 3~6. <좌동>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제18 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제18 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제18</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p> <p>③ <생략></p> <p>제17~3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4조 <생략></p> <p>제5조(가입자 교육)</p> <p>① <생략></p> <p>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p> <p>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p> <p>③~④ <생략></p>	<p>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황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p> <p>③ <좌동></p> <p>제17~31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4조 <좌동></p> <p>제5조(가입자 교육)</p> <p>① <좌동></p> <p>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p> <p>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p> <p>③~④ <좌동></p>	<p>조 개정 (2022.4.14)</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⑤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p> <p><u>※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u></p>	<p>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p>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조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생략>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u>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u>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p> <p>다~차. <생략> 2~7. <생략> ② <생략></p> <p>제3~5조 <좌동></p> <p>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생략>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u>양도 및 담보제공</u>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p> <p>제1조 <좌동></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좌동>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u>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u>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p> <p>다~차. <좌동> 2~7.<좌동> ② <좌동></p> <p>제3~5조 <좌동></p> <p>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좌동>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u>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u>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제17 조 개정 (2022.4.14)</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행합니다. ③ <생략></p> <p>제7~15조 <생략></p> <p>제16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u>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u>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p> <p>제17~3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0년 12월 24일</u>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p>	<p>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좌동></p> <p>제7~15조 <좌동></p> <p>제16조(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u>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u>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좌동></p> <p>제17~3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2년 5월 4일</u>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u></p> <p>제2조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p> <p><u>※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u></p>	<p>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7조 개정 (2022.4.14)</p> <p>법 개정 시행일 반영</p>